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7년 12월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11월 21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7년 1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1997년 12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행정과장 오 용 수

가. 제안사유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환경부예규 제159호 ('97.9.1)에 의해 인상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1차 위반자 3만원 → 5만원으로 인상
 - 2차 위반자 3만원 → 5만원으로 인상
 - 3차 위반자 3만원 → 5만원으로 인상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현행 5~10만원 → 10만원~20만원으로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박 홍 표

- 환경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투기금지 지역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할 때 우리 서구 관내에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타지역을 방문하는 관내 주민들은 물론 관내에서만 생활 근거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의 제고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양양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 논리적으로만 따져본다면 첫째, 입법예고와 더불어 공청회를 거쳤다면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의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2차, 3차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그 위반행위의 회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의견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1. 일반기준 (생략)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생략)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에 버린 자 (법제7조)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kg 미만 (2) 1kg 이상 10kg 미만 (3) 10kg 이상 다.라 (생략) 2. (생략) 3. (생략)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 가.----- ----- ----- 나.----- ----- -----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다.라 (행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0	30	30			50	50	50
							100	150	200